

	<h2 style="margin: 0;">교무위원회 운영규칙</h2>		규정번호	5-0-2
			제정일자	2007.04.01
	개정일자	2012.04.30		
	개정번호	Ver.4	총페이지	2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동양미래대학교 학칙 제58조에 의거 교무위원회(이하 “본 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본회는 총장의 자문기구로서 학사운영 관련 규칙 제·개정과 총장이 부여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.

- 제3조(구성)** ① 본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위원을 둔다.
 ② 위원은 총장과 보직을 맡고 있는 교수 및 사무처장으로 한다.
 ③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된다.
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- 제4조(회의 및 회의록)** ① 본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.
 ② 본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.
 ③ 본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④ 본회의 회의록은 교무부처장이 작성하고 총장의 결재를 받은 후 공지한다.

제5조(결과처리) 본 회의에서 심의한 사안은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.

제6조(개정) 이 규칙은 본 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 개정한다.

부 칙

- 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(2) 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진행된 회의나 기타 심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거 심의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- 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0년 5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.